Part.2 세무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 전략의 새로운 선택지

한화생명

심의번호 상속연구소-2026-01-002 © Hanwha Life Insurance Co.,Ltd.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판단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Part.2 세무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 전략의 새로운 선택지

한화생명 신은영 세무사
eyshin@hanwha.com | 작성일 : 2025.12.31

Summary

-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속에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로만 감내해야 했던 투자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배당소득 일부를 별도로 떼어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개인주주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짐. 투자자는 단순히 배당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유 종목의 배당 기조와 공시된 배당 정책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심의번호 상속연구소-2026-01-002 © Hanwha Life Insurance Co.,Ltd.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인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판단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세제 개편안 의결 …
2026년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시행 확정

-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새로운 과세 체계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

-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구간별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명확함. 국내 상장사의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해 고착화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기업이 축적한 이익을 배당으로 환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취지. 동시에 배당소득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담겨 있음.

- 다만,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 제도이므로, 투자자들은 이 기간을 고려한 중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함.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후수익률' 극대화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벽, 왜 문제였나

-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이로 인해 같은 배당소득이라도 **개인의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부담의 체감 불균형 발생**

2. 2026년부터 달라지는 배당소득 과세 방식

-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새로운 분리과세 체계가 적용됨.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되며, 배당금 규모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됨.**

종합과세			고배당 분리과세		
배당소득 구간	과세방식	세율	배당소득 구간	과세방식	세율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과세표준별 14~45%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분리과세	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분리과세	25%
			50억원 초과	분리과세	30%

심의번호 상속연구소-2026-01-002 © Hanwha Life Insurance Co.,Ltd.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판단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부담은 얼마나 달라질까

- 금융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됨. 즉, **배당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임.

- 한편,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됨. **배당소득은 금액구간에 따라 14%, 20%, 25%, 30%의 분리과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는 기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됨.

[예시] 배당소득 규모에 따른 세 부담 비교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은 연 1억원일 경우 가정

배당소득	종합과세시	고배당 분리과세시
2천만원일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이므로 배당소득은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종합소득 1억원만 종합과세됨. 즉, **배당소득은 14%, 나머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율 24%** 적용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이므로 배당소득은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종합소득 1억원만 **종합과세**되므로, 고배당 분리과세의 효과는 없음.
1억원일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배당소득금액 전액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종합 **합산**하여 최종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38%**를 적용 받게 됨.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적용, **2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종합소득금액(1억원)과 합산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율 38% 가정시 약 1,920만원 상당 절세효과 발생**
5억원일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배당소득 금액 전액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종합 **합산**하여 최종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40%**를 적용 받게 됨.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적용, **2천만원 초과~3억원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종합소득금액(1억원)과 합산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율 40% 가정시 약 9,100만원 상당 절세 효과 발생**

심의번호 상속연구소-2026-01-002 © Hanwha Life Insurance Co.,Ltd.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판단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누구에게 유리한가

- 고배당 분리과세의 유불리는 배당소득 자체보다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쳤을 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은지**가 핵심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약 1천4백만원~5천만원 구간에 속하는 투자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6~15% 수준으로 적용되며 이 구간에서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고배당 분리과세율 14%와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음.

- 한편,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24%로 상승하고, 이 시점부터는 배당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고배당 분리과세가 유리해지기 시작함.

- 특히,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을 초과**하면 이 구간부터는 종합소득세율이 3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분리과세와의 세부담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됨.

- 즉, 이 구간의 고소득자는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세율 차이만으로도 수천만원 단위의 추가 세금을 감수해야 하므로 **과세표준이 5천만원 넘는 투자자라면 고배당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함.**

투자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 고배당 분리과세는 **고소득자일수록 선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합소득 규모 파악
근로·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이 어느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지부터 점검해야 하므로 배당소득을 제외한 본인의 종합소득 규모를 파악해야 함.

배당소득 과세구간 확인
배당금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은 14%에서 30%까지 달라지므로 고배당 종목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이 어느 과세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함.

종합과세·분리과세 세율 비교
종합과세시 적용되는 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검토하여 실제 절세 효과를 비교·판단해야 함.

-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사를 중심으로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이제 투자자는 '얼마를 벌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과세될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

심의번호 상속연구소-2026-01-002 © Hanwha Life Insurance Co.,Ltd.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판단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 전략의 선택지가 되다

-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는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배당투자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 그리고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단순한 세금 절감 차원을 넘어 현금흐름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개인주주로 (2)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충족하면서 (3)**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만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배당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유 종목의 배당 기조와 공시된 배당 정책을 함께 점검**해 제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적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함.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거주자 주주
고배당 상장법인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충족 법인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적용

심의번호 상속연구소-2026-01-002 © Hanwha Life Insurance Co.,Ltd.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판단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필수 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